

##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(공시송달)

「보험업법」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원인사실, 과태료 금액,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,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2월 8일  
금융위원회

### 1. 공시송달 대상자

성명/기관명	주민등록번호	주소
이채운	630517-*****	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61번가길
군포보험대리점 (최선희)	600719-*****	경기도 의왕시 평의길
오행금	640821-*****	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
이화선	610426-*****	강원도 태백시 번영로

### 2. 서류의 명칭 :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

### 3. 서류의 내용 :

#### 가.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

처분 대상자	처분 원인	근거 법규	처분내용
이채운	2013.10.18.~2013.11.13. 기간 중 △△생명보험(주)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5건의 생명보험계약(초회 보험료 2백만원)을 ▲▲코리아(주)(舊 (주)☆☆에셋코리아)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OO등 4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, 모집수수료 5.6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	보험업법 제97조, 제209조	과태료 370만원

처분 대상자	처분 원인	근거 법규	처분내용
군포보험대리점 (최선희)	2013.7.7.~2013.9.24. 기간 중 8건의 손해보험계약(초회 보험료 11.7백만원)을 (주)△△△△△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차OO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, 모집 수수료 1.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	보험업법 제97조, 제209조	과태료 220만원
오행금	2013.6.26.~2013.11.28. 기간 중 △△생명보험(주)(舊 ▲▲▲생명보험(주)) 및 ☆☆코리아(주)(舊 (주)★★코리아)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17건의 생명보험계약(초회보험료 14백만원)을 ☆☆코리아(주)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엄OO 등 6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, 모집수수료 4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	보험업법 제97조, 제209조	과태료 1,000만원
이화선	2013.9.26.~2013.11.27. 기간 중 15건의 손해보험계약(초회보험료 1백만원)을 (주)△△△△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임OO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, 모집 수수료 4.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	보험업법 제97조, 제209조	과태료 500만원

나. 유의사항

- 위반사실,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바, 관보 공고일로부터 24일까지 금융위원회 보험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,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됩니다.
- 관보 공고일로부터 24일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「질서위반 행위규제법」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%를 감경 받을 수 있으나, 납부 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.

4.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(2100-2967)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